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
	 금융보안원	<b>보도</b>	<b>2020.5.11.(월) 15:00</b>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(02-2100-2620)	<b>담 당 자</b>	김 영 민 사무관 (02-2100-2625)	
	금융보안원 보안전략본부장 김 영 전(02-3495-9004)		임 구 락 센터장 (02-3495-9900)	

## 제 목 :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「데이터 거래소」 출범

### 1 개 요

□ 금융보안원은 '20.5.11.(월) 금융분야 「데이터 거래소(금융보안원 운영)」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.

- (일시·장소) '20.5.11.(월) 15:00~16:00, 포시즌스호텔(서울)
- (행사 취지) 빅데이터 산업 주요 플랫폼인 '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' 출범을 기념
- (주요참석자) 금융위(부위원장), 금융보안원, 금융결제원, 신용정보원, 코스콤, 보험개발원, 신한은행, 신한카드, KCB, SKT 등
- (주요내용) 축사, 시범거래, MOU 체결(금융 데이터 유관기관, 금보원-SKT) 등

□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“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”고 밝히면서,

- “금융회사, 핀테크·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·결합·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.

□ 한편, 同 행사에서는 '데이터 유통·활용 혁신 MOU\*(5개 유관기관)' 및 '금융-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\*\*'(금보원-SKT)'를 체결하고,

\* (대상) 금융보안원, 금융결제원, 한국신용정보원, 코스콤, 보험개발원  
(내용)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, 데이터 활용 지원, 가이드·표준 개발 등

\*\* (내용) 금융-통신 융합 데이터 발굴,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 등

-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시범거래\* 현황(총 13건)도 발표하였습니다.

\* 신한은행, 신한카드, KCB가 등록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, 소득·지출·금융자산 정보, 행정동 단위별 성별·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, 연구소 등이 구매

## 2 데이터 거래소 운영 방안

### 1. 개요

□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하여 비식별정보,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시범운영합니다.

○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하였습니다.

○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,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.

⇒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운영

□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, 계약, 결제,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(One-Stop)으로 지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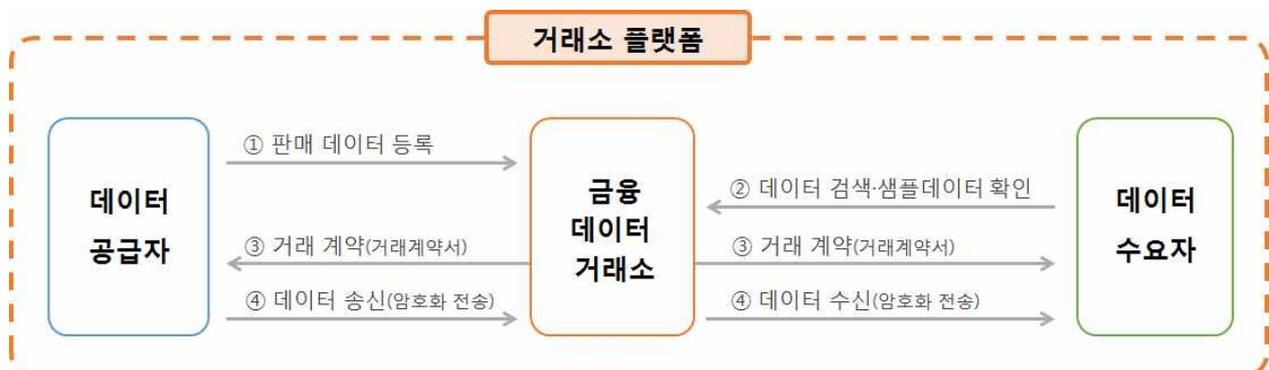
○ 또한,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지원합니다.

\* 수요자가 다수 또는 특정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공급을 요청

※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.8%를 차지 (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,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)

⇒ 별도 연락수단 등 이용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쏠 거래 절차 진행

#### <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>



## 2. 거래소 주요 기능

### ①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지원

-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\*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도 지원하겠습니다.

\*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·활용하고 결과만 반출(보안성 高)

- 거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보원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·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-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하여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.

⇒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를 사전·사후적으로 차단

### ② 안전한 익명·가명정보 거래·활용 지원(관련 신정법 시행('20.8.5일) 후 지원)

-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·가명처리 적정성, 구매자의 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겠습니다.

⇒ 제공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 등 최소화 → 판매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

### ③ 데이터 유통·결합 통합 지원(관련 신정법 시행('20.8.5일) 후 지원)

- 데이터 결합·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(데이터 결합업무 등 수행)으로 지정하겠습니다.

⇒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유데이터와 결합하려는 업계의 수요 충족

#### < 데이터 결합 활용 예시 >

- ① 보험정보(사고정보) + 차량안전장치 정보 →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
- ② 소셜 데이터(기업) + 종합주가지수 → 로보어드바이저 개발
- ③ 공공정보 + 카드매출정보 →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

### 3. 데이터 유통 지원 방안

#### ①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('20.5.11일)

- **(현황)**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은 초기단계로 금융 데이터 유통 사례가 적고, 관련 절차·기준 등도 불명확합니다.
- **(개선)**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\*을 발간합니다.

\* **(주요내용)**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, 유통 절차,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 산정,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,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

#### ②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 (지속)

- **(현황)** 국내 데이터 시장은 아직 데이터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\*하여 구매자가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.

\*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'불합리한 데이터 가격'이 약 33%를 차지('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',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'18.10)

- **(개선)**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('20년 예산 575억원(과기부))를 지원하겠습니다.

\* 관계 부처(과기부)와의 협의를 통해 '금융보안원'을 '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전문 기관'(역할 :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접수, 사전심사 등)으로 지정

#### ③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 (既 조치, '20.2.6. 허용)

- 데이터 유통이 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함을 명확히하여 데이터 유통에 관한 부수업무 신고를 허용하였습니다.

※ '20.4.9일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은행업권의 경우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 가능

#### ④ 금융데이터 협의회 운영 (既 조치, '20.1.21. 출범)

- 금융회사, 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'금융데이터 협의회\*'를 지속 운영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.

\* 금융회사, 핀테크·상거래 기업, 금융당국,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(간사 : 금융보안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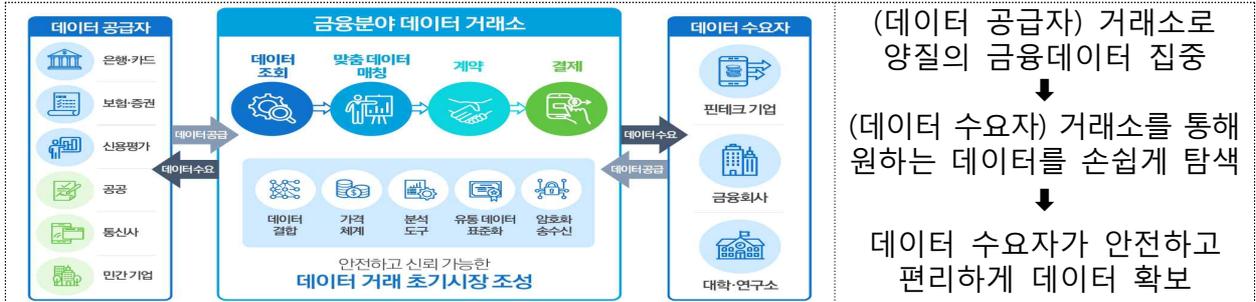
### 3 기대 효과

◇ 안전한 금융분야 초기 빅데이터 유통 시장 조성

⇒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

⇒ 데이터 기반 혁신 금융서비스 발굴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

① 데이터 수요자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이 구축됩니다.



② 핀테크·창업 기업 등의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됩니다.



③ 금융회사 등의 이종분야 데이터 활용 新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됩니다.



별첨 :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

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</p>	<p>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</p>	<p>질병관리본부 콜센터</p>	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